

##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alidity of a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Awards in Arbitration Agreemen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and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

강수미\*  
Soo-Mi Kang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미국 실정법상의 중재판정 취소사유
  - III.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 IV.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논쟁
  - 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당사자자치, 중재판정,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중재합의,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angsophia@yonsei.ac.kr](mailto:kangsophia@yonsei.ac.kr)

## I. 들어가며

중재는 법적 분쟁 해결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는 국가마다 그 구체적인 운용 모습이 다르지만, 중재가 분쟁을 제3자인 중재인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해결하는 제도인 것과 관련하여, 우선 분쟁당사자 간에 해당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하면 그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내려진 국가의 입법정책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중재인의 중재판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중재판정에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중재의 당사자는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물론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도 국가 간에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 취소사유가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실정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유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합의한 경우<sup>1)</sup> 그러한 중재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즉 당사자가 그 합의에서 정해진 사유를 주장하며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입법례(중재법 제36조 제2항)를 취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이하 'FAA'라고 한다)이 중재판정 취소 규정에서 우리나라 중재법과는 달리 취소사유가 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적 열거인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합의 시에 또는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실정법상의 중재판정 취소사유 외의 사유를 취소사유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다만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단일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 전반에 관하여 다루는 것은 논점을 방만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미국 판례상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지정한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그 적용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에 해당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를 전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원 간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은 2008년 3월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사건(이하 'Hall Street 사건'이라 한다)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FAA에 의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1) 이러한 중재합의를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라고 할 수 있다.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이면에는 중재인이 법을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다룰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이하 ‘UNCITRAL’이라 한다)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의 중재 관련 법규에서는 분쟁의 실체에 관한 판단기준의 결정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한편, 중재인의 이러한 법 적용 위반을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본 후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관한 미국의 입법내용을 FAA를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II),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이 직접 다루어졌던 판례를 살펴보고, 연방대법원의 Hall Street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을 검토한 후(III),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에 관한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IV).

## II. 미국 실정법상의 중재판정 취소사유

### 1.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관한 입법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규율방식을 살펴보면, 취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와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과 같이 “... 하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중재법 제3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취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UNCITRAL 모델법<sup>3)</sup>과 프랑스 민사소송법<sup>4)</sup> 등이 있다.<sup>5)</sup> 또한 스위스<sup>6)</sup>의 연방 국

2) 우리나라 중재법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중재법 제29조 제1항 전문), 중재법은 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지정한 법을 잘못 적용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도 중재인의 법 적용의 잘못을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중재법 제36조 제2항은 취소사유를 한정적 열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례에서는 당사자에게 중재인의 법 적용의 잘못을 다룰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유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로 정하는 중재합의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중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내국인이 국제중재사건의 당사자일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른 입법례를 가진 국가에서 중재판정의 취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UNCITRAL 모델법 제34조 제2항은 “중재판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에 명시된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An arbitral award may be set aside by the court specified in article 6 only if:).”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사법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편(연방 국제사법 제190조 제2항7), 2020년 개정<sup>8)</sup>을 통해 국내중재에서 인정되던 중재판정에 대한 심사(Revision)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sup>9)</sup> 또한 당사자가 모두 스위스에 주소,

- 4) 프랑스의 경우는 중재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civile)에 두고 있는데, 국내중재(제1442조 내지 제1503조)와 국제중재(제1504조 내지 제1527조)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방법도 다른데, 국내중재 사건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곳의 항소법원에 상소 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4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지만(민사소송법 제1489조), 당사자가 불복수단으로 상소를 합의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변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하거나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90조). 또한 국내중재 사건의 중재판정은 민사소송법 제1492조에 규정된 사유(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부적법하게 구성된 경우, 중재판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을 위반하여 판정한 경우, 중재판정이 공서에 반하는 경우, 중재판정에 판단의 근거가 된 이유, 중재판정의 작성일자, 중재인의 성명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중재판정이 다수결에 의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다.
- 국제중재 사건의 경우 프랑스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이 허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1518조), 이러한 중재판정은 민사소송법 제1520조에 규정된 사유(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부적법하게 구성된 경우, 중재판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을 위반하여 판정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국제적 공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때에만 취소될 수 있다.
- 5) 프랑스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Laurence Franc, "Contractual Modification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The French Posi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0 No. 2, 1999, p. 216 참조.
- 6) 스위스의 경우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별하여 국내중재는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에서, 국제중재는 연방 국제사법(Bundesgesetz über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의(Beschwerde)와 심사(Revision)의 불복방법이 허용되는데, 이의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Ein Schiedsspruch kann nur angefochten werden, wenn:)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다만 이의에 대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여 당사자가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절차상의 권리구제 수단을 거친 후에만 이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1조).
- 7) 연방 국제사법 제190조 제2항: 중재판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다(Der Entscheid kann nur angefochten werden:).
- 단독중재인이 적법하게 선정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부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wenn die Einzelschiedsrichterin oder der Einzelschiedsrichter vorschriftswidrig ernannt oder das Schiedsgericht vorschriftswidrig zusammengesetzt wurde;)
  -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부정한 경우(wenn sich das Schiedsgericht zu Unrecht für zuständig oder unzuständig erklärt hat;)
  - 중재판정부가 제출되지 않은 쟁점에 관하여 판정한 경우 또는 권리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wenn das Schiedsgericht über Streitpunkte entschieden hat, die ihm nicht unterbreitet wurden oder wenn es Rechtsbegehren unbeurteilt gelassen hat;)
  - 당사자 평등 대우의 원칙 또는 법적 심문의 원칙이 침해된 경우(wenn der Grundsatz der Gleichbehandlung der Parteien oder der Grundsatz des rechtlichen Gehörs verletzt wurde;)
  - 중재판정이 공서에 반하는 경우(wenn der Entscheid mit dem Ordre public unvereinbar ist.)
- 8) 이 개정 법률은 2020. 6. 19.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 9) 연방 국제사법 제190a조
-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중재판정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Eine Partei kann die Revision eines Entscheids verlangen, wenn:).
    - 당사자가 이전 절차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던 중요한 사실이나 결정적인 증거를 사후에 발견한 경우. 다만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실이나 증거는 제외된다(sie nachträglich erhebliche Tatsachen erfährt oder entscheidende Beweismittel findet, die sie im früheren Verfahren trotz gehöriger Aufmerksamkeit nicht beibringen konnte; ausgeschlossen sind Tatsachen und Beweismittel, die erst nach dem Schiedsentscheid entstanden sind;).

상거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중재합의 또는 후속적인 서면 합의로 명시적으로 중재판정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지만, 연방 국제사법 제190a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심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연방 국제사법 제192조 제1항10).

이러한 입법례는 중재인의 법 적용 위반을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입법례를 채택한 국가에서 중재인의 법 적용 위반을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영국의 중재법(Arbitration Act of 1996)은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서 생긴 법률문제(a question of law)에 관하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중재법 제69조 제1항11).<sup>12)</sup> 이러한 입법례에서는 중재인의 법 적용 위반을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 b. 형사소송절차에서 중재판정이 관련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다만 형사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는 증거가 다른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ein Strafverfahren ergeben hat, dass durch ein Verbrechen oder ein Vergehen zum Nachteil der betreffenden Partei auf den Schiedsentscheid eingewirkt wurde; eine Verurteilung durch das Strafgericht ist nicht erforderlich; ist das Strafverfahren nicht durchführbar, so kann der Beweis auf andere Weise erbracht werden;).
- c.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중재절차가 종료된 후에 비로소 제180조 제1항 c호에 따른 기피사유를 알게 되었고 다른 권리구제 수단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ein Ablehnungsgrund gemäss Artikel 180 Absatz 1 Buchstabe c trotz gehöriger Aufmerksamkeit erst nach Abschluss des Schiedsverfahrens entdeckt wurde und kein anderes Rechtsmittel zur Verfügung steht.)
2. 심사청구는 심사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한다. 중재판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1항 제b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Das Revisionsgesuch ist innert 90 Tagen seit Entdeckung des Revisionsgrundes einzureichen. Nach Ablauf von zehn Jahren seit Eintritt der Rechtskraft des Entscheids kann die Revision nicht mehr verlangt werden, ausser im Falle von Absatz 1 Buchstabe b.).
- 10) 연방 국제사법 제192조 제1항: 당사자가 모두 스위스에 주소, 상거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합의 또는 후속적인 서면합의로 명시적으로 중재판정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90a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심사는 포기될 수 없다. 위 합의는 제178조 제1항에 따른 방식을 필요로 한다(Hat keine der Parteien ihren Wohnsitz, ihren gewöhnlichen Aufenthalt oder ihren Sitz in der Schweiz, so können sie durch eine Erklärung in der Schiedsvereinbarung oder in einer späteren Übereinkunft Rechtsmittel gegen Schiedsentscheide vollständig oder teilweise ausschliessen; auf eine Revision gemäss Artikel 190a Absatz 1 Buchstabe b kann nicht verzichtet werden. Die Übereinkunft bedarf der Form gemäss Artikel 178 Absatz 1.).
- 11) 제69조 법률문제에 관한 항소(Appeal on point of law)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고지하고)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판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eal to the court on a question of law arising out of an award made in the proceedings.}.
- 12) 영국에서의 논의에 관해서는 Okezie Chukwumerije, "Reform and Consolidation of English Arbitration Law,"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8 No. 1, 1997, p. 44 참조.

## 2. FAA 상의 취소사유

FAA 제10조 제a항<sup>13)</sup>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은 중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네 가지의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다.<sup>14)</sup> 그 가운데 세 가지 취소사유 {9 U. S. C. §10 (a) (1), (2), (3)}는 중재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한 가지 취소사유 {9 U. S. C. §10 (a) (4)}는 중재인의 권한초과 등에 의한 중재판정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어쨌든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의 적용 위반을 취소사유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판정 내용의 공서 위반도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미국의 경우는 FAA 제10조에 규정된 취소사유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게다가 FAA는 제10조에 열거된 취소사유가 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적 열거인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FAA에 규정이 있는 취소사유 외의 사유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판례와 이론상 다투어지고 있다.

## 3. 판례법상의 취소사유

FAA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판례법상으로는 ‘법의 명백한 무시(manifest disregard of the law)’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다.<sup>16)</sup> 이러한 개념을 최

13) 우리나라의 중재법과는 달리 FAA는 중재판정이 취소되고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기한이 만료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동일한 중재인에 의한 재심리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9 U. S. C. §10 (b)}.

14) 제10조 중재판정의 취소, 취소사유, 재심리(Same; vacation; grounds; rehearing)

(a)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은 중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United States court in and for the district wherein the award was made may make an order vacating the award upon the application of any party to the arbitration-).

(1) 중재판정이 부패, 사기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경우(where the award was procured by corruption, fraud, or undue means;)

(2) 중재인 전원 또는 그 일부에 명백한 불공정 또는 부패가 있었던 경우(where there was evident partiality or corruption in the arbitrators, or either of them;)

(3) 중재인이 충분한 이유가 제시된 심리의 연기를 부당하게 거부하였거나 다툼이 있는 사항에 관한 적절하고 중요한 증거를 심리하기를 부당하게 거부하였거나 기타 당사자의 권리를 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where the arbitrators were guilty of misconduct in refusing to postpone the hearing, upon sufficient cause shown, or in refusing to hear evidence pertinent and material to the controversy; or of any other misbehavior by which the rights of any party have been prejudiced; or)

(4) 중재인이 권한을 초과하였거나 권한을 불완전하게 행사하여 부탁받은 중재의 본안에 관한 상호적·종국적·확정적인 중재판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where the arbitrators exceeded their powers, or so imperfectly executed them that a mutual, final, and definite award upon the subject matter submitted was not made.)

15) Stephen P. Younger, “Agreements to Expand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Albany Law Review*, Vol. 63 Iss. 1, 1999, p. 242.

16) *First Options of Chicago, Inc. v. Kaplan*, 514 U. S. 938(1995), at 942{*Wilko v. Swan* 판결을 인용하여 중재가능성을 넓게 인정하였지만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법원이 재심리 권한을 가진다고 하였다}; *Eljer*

초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연방대법원의 *Wilko v. Swan* 판결<sup>17)</sup>은 방문이기는 하지만, “중재인의 법 해석이 법의 명백한 무시가 아닌 때에는 법 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재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sup>18)</sup> 그런데 위 판결은 ‘명백한 무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연방법원에서는 ‘명백한 무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제2순회구 항소법원은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v. Bobker* 판결<sup>19)</sup>에서 “법의 잘못이 명백하고, 중재인이 될 자격을 가진 평균인이 쉽고 즉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법의 명백한 무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무시에는 중재인이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 원칙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무시하였거나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라고 하였다.<sup>20)</sup>

이와는 달리 ‘법의 명백한 무시’라는 개념을 부정한 판결도 있는데,<sup>21)</sup> *Ainsworth v. Skurnick* 판결<sup>22)</sup>은 FAA가 법 적용의 잘못에 따른 중재판정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법의 명백한 무시’라는 개념을 부정하였다. 위와 같이 ‘법의 명백한 무시’라는 개념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4. 검토

FAA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취소사유 외의 사유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은 FAA의 규정이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있다.<sup>23)</sup> 이러한 불명확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당사자

*Mfg., Inc. v. Kowin Development Corp.*, 14 F. 3d 1250(7th Cir. 1994), at 1253-1254(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할 당시 알고 있던 법을 고의로 무시한 때에는 중재판정이 취소된다고 하였다); *Lander Company Inc. v. MMP Investment, Inc.*, 107 F. 3d 476(7th Cir. 1997), at 480(‘법의 명백한 무시’라는 판례법상의 취소원인이 있으므로 FAA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상의 취소원인보다 개방적이라고 하였다); *Williams v. Cigna Financial Advisors Inc.*, 197 F. 3d 752(5th Cir. 1999), at 758(FAA에 규정이 없는 취소사유로는 ‘법의 명백한 무시’ 외에 중재판정이 공서에 반하는 경우, 중재판정이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재판정이 본계약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17) *Wilko v. Swan*, 346 U. S. 427, 74 S. Ct. 182(1953).

18) *Id.*, at 436.

19)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v. Bobker*, 808 F. 2d 930(2d Cir. 1986).

20) *Id.*, at 933.

21) *Baravati v. Josephthal, Lyon & Ross, Inc.*, 28 F. 3d 704(7th Cir. 1994), at 706; *George Watts & Son, Inc. v. Tiffany and Co.*, 248 F. 3d 577(7th Cir. 2001), at 580.

22) *Ainsworth v. Skurnick*, 960 F. 2d 939(11th Cir. 1992), at 941.

23)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입법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Noah D. Rubins,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and Vacatur of Arbitral Award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2 No. 3-4, 2003, p. 386 참조.

는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를 통해 불복의 수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이 문제되었던 미국의 판례를 검토해 보 고자 한다.

### Ⅲ.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 1. LaPine v. Kyocera 사건

##### (1) 사건의 개요

1984년 11월 캘리포니아 법인 X(LaPine Technology Corp.) 등과 일본법인 Y(Kyocera Corp.)는 Y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를 제조하고, X 등이 이를 판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1986년에 이르러 X 등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X 등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최종합의(Definitive Agreement)가 체결되었다. 그 합의는 Y가 X 등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의 준거법을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최종합의 8. 10조 (d)에 기재된 취소사유 확장 합의<sup>24)</sup>의 해석이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Y가 위 최종합의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X 등은 1987년 5월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Y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Y는 분쟁의 해결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라고 한다)의 중재법원에 맡기기로 정한 최종합의 8. 10조 (b)를 근거로 이 사건을 ICC 중재법원에서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Y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분쟁의 해결이 ICC 중재법원에 맡겨졌다. ICC 중재법원은 Y의 청구를 기각하고, Y가 X 등에게 약 2억 5,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X 등은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이 사건 확장 합의에 기한 중재판정의

24) 이 사건 취소사유 확장 합의는 “중재인은 서면에 의한 중재판정을 교부하기로 한다. 중재판정에는 판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기재하고, 상세한 사실인정 및 법률에 관한 결론을 포함하기로 한다.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확인 또는 취소, 수정 또는 정정함으로써 그 중재판정에 따른 판결을 등록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중재판정을 취소, 수정 또는 정정하기로 한다. (1) FAA에 규정된 사유에 의한 경우, (2) 중재인에 의한 사실인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우, (3) 중재인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론이 잘못된 경우”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확인을 구하였고, Y는 ICC 중재법원이 계약준거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확장 합의를 근거로 중재판정의 취소 및 수정을 구하였다.

## (2) 제1심판결<sup>25)</sup>

제1심을 담당할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FAA 제10조 제a항에 열거된 취소사유가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Y의 주장을 배척하였다.<sup>26)</sup> 법원은 당사자가 FAA에 열거된 사유 외의 취소사유를 계약으로 창설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기준이 된 근거는 형식적인 측면의 것과 실질적인 측면의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질적 근거로는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함으로써 생기는 미합중국의 기본적인 중재 정책의 후퇴를 들었다. 법원은 이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은 중재를 비롯한 재판 외의 분쟁 해결 수단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당사자에게도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긍정하여 이러한 분쟁 해결 수단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에 반한다.”라고 하였다.<sup>27)</sup>

형식적 근거로는 FAA에 정해진 취소사유가 한정적 열거라는 점을 들었다. 취소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결과 당사자는 계약으로 취소사유를 새로이 창설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Y의 주장별로 FAA 제10조 제a항의 조문을 검토하여, 이 사건이 FAA 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선 중재인이 권한을 넘어 판단하였다는 주장{9 U. S. C. §10 (a) (4)에 입각한 주장}에 대하여는 ICC 중재정의 준거법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할 다음 법원은 중재정의 계약조항에 대한 해석의 당부에 관하여 심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ICC 중재정이 중요한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9 U. S. C. §10 (a) (3)에 입각한 주장}과 중재판정이 부정한 수단에 의해 얻어졌다는 주장{9 U. S. C. §10 (a) (1)에 입각한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였다.<sup>28)</sup>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Y의 주장은 배척하고 X 등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자 Y는 원심에서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중재판정이 X 등의 부정한 수단(재심리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다그쳤다)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제9순회 구 항소법원에 항소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다.

25) LaPine Technology Corp. v. Kyocera Corp., 909 F. Supp. 697(N. D. Cal. 1995).

26) Id., at 709. 이 밖에도 법원은 Y의 주장에 따라 분쟁 해결조항과 본계약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여 분리가능성을 부정하였고, 이 사건 확장 합의가 본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확장 합의의 무효로 인해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는 Y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7) Id., at 706.

28) Id., at 706-708.

### (3) 항소심판결<sup>29)</sup>

#### 1) 판결의 요지

항소심은 이 사건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였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항소심은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근거를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즉 “합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FAA 상의 근거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합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략) FAA의 일차적인 목적이 중재합의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Volt 판결<sup>30)</sup>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백하다.”<sup>31)</sup>라고 하였다. 이어서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한 몇몇 판례를 근거로 들고, 그러한 판례의 태도를 긍정함으로써 항소심의 입장을 밝힌 다음 “FAA는 법원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부적(apotropaion)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략)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판결은 파기·환송되어야 한다.”<sup>32)</sup>라고 하였다.

항소심판결에는 Alex Kozinski 판사의 반대의견과 Peggy Mayer 판사의 보충의견이 부가되었다. 이 가운데 P. Mayer 판사의 보충의견은 중재합의를 존중하는 미합중국의 중재정책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또한 그는 중재에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이 인용한 몇몇 판례는 중재의 시기, 중재지 및 중재의 방법을 그 범위로 고려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법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등의 비판도 하였다.<sup>33)</sup> 이러한 비판은 A. Kozinski 판사의 반대의견의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즉 “중재를 할 것인지, 무엇에 관하여 중재를 할 것인지, 어떻게 중재를 진행할 것인지, 언제 중재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상 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Y는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확장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판례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확장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sup>34)</sup>라고 하였다.

#### 2) 항소심판결 후의 상황

항소심판결에 의해 지방법원에서 사건의 재심리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2000년 4월에 중재판정 가운데 계약의 성립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Y가 주장하는 법 적용의 잘못이 없

29) LaPine Technology Corp. v. Kyocera Corp., 130 F. 3d. 884(9th Cir. 1997).

30) Volt Information Sciences, Inc. v. Board of Trustees of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489 U. S. 468, 109 S. Ct. 1248(1989).

31) 130 F. 3d. 884, at 888.

32) Id., at 890.

33) Id., at 891.

34) Id.

고, 중재판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해 10월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2002년 5월 Y가 X 등에게 4억 2,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Y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제9순회구 항소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같은 해 7월 Y가 X 등에게 X 등의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약 4억 5,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sup>35)</sup> Y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법원의 전원법정(全員法廷; en banc)에 의한 재심리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 (4) 항소심 전원법정 판결<sup>36)</sup>

항소심 전원법정은 이 사건 확장 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다시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였다. 즉 “당사자는 FAA와 다른 재심리의 기준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연방법원이 중재판정을 재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잘못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사인은 중재절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이 중국적인 것으로 되면 그 중재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이다. FAA에 규정된 취소사유 외의 사유에 의한 재심리를 법원에 구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 조항은 무효이고 분리 가능한 것이다.”<sup>37)</sup>라고 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면서 먼저 FAA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리 가능성을 확장하면 재판 외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중재의 장점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항소심이 이 사건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면서 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용하였던 연방대법원의 Volt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 아니라고 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의 재심리사유를 확장하는 것은 FAA의 기본 정책에도 반한다고 하였는데, 재심리사유의 확장이 중재의 매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사안이 FAA 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을 짚어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FAA 상의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8)</sup> 이에 대한 반대의견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2003년 12월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다.

35) Kyocera Corp. v. Prudential-Bache Trade Services, Inc., 299 F. 3d 769(9th Cir. 2002).

36) Kyocera Corp. v. Prudential-Bache Trade Services, Inc., 341 F. 3d 987(9th Cir. 2003).

37) Id., at 1003.

38) Id., at 997-1000.

## 2.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다른 판례의 입장

### (1)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

#### 1) Gateway 사건<sup>39)</sup>

LaPine 항소심판결이 내려지기 약 2년 전인 1995년에 제5순회구 항소법원은 Gateway Technologies, Inc. v. MCI Telecommunications Corp. 판결에서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종국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항소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규정한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Y(MCI Telecommunications Corp.)가 X(Gateway Technologies, Inc.)에게 2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 X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확인을 구한 데 대하여, Y가 중재판정에 법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확장 합의에 근거하여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 등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확장 합의에서의 ‘법의 잘못’에 관한 심사는 재판의 경우와 같이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Y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Y가 항소하였는데, 제5순회구 항소법원은 중재가 당사자의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재심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이러한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 2) Syncor 사건<sup>40)</sup>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 위반과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법의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재심리를 인정하기로 한 확장 합의의 효력 유무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투어졌다. 제1심은 이러한 확장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4순회구 항소법원은 Gateway 판결과 LaPine 판결이 인용하였던 연방대법원의 Volt 판결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중재인의 법적 판단을 재심리할 것을 명하였다.

### (2)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

#### 1) Bowen 사건<sup>41)</sup>

X(Bowen) 등은 Y(Amoco Pipeline Co.)의 과실로 유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오염되었음을 이유로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Y는 X 등의 선조 때인 1943년에 체결된 통행권계약(right-of-way agreement)에 있는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중재부탁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39) Gateway Technologies, Inc. v. MCI Telecommunications Corp., 64 F. 3d 993(5th Cir. 1995).

40) Syncor Intern. Corp. v. McLeland, 120 F. 3d 262(4th Cir. 1997).

41) Bowen v. Amoco Pipeline Co., 254 F. 3d 925(10th Cir., 2001).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중재절차의 개시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법과 증거에 기초하지 아니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때에는 법원에 의한 재심리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중재판정부가 Y의 주장을 배척하자, Y는 위 확장 합의에 근거하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FAA에 규정이 없는 사유에 관한 재심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Y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Y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즉 “FAA의 한정적인 취소사유는 중재절차의 존중을 보장하고, 중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중재합의의 집행을 법원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FAA가 취소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연방의 정책이 명백해진다. (중략) FAA 제10조는 법원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중략) 계약으로 재심리의 기준을 확장하는 것은 특히 사실에 관한 재심리의 경우 분명히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중재판정의 중국성을 약화시킨다. 왜냐하면 중재판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원은 중재하기로 한 합의를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려진 중재판정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sup>42)</sup>라고 하였다.

## 2) UHC Management 사건<sup>43)</sup>

이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확장 합의가 없었는데, 불리한 중재판정을 받은 X가 중재인이 준거법에 구속된다고 정한 규정을 근거로 법원의 재심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8순회구 항소법원은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재심리하기 위한 중재절차상의 상소를 합의할 수는 있지만, 해당 중재판정을 사법의 영역에서 재심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X의 주장을 배척하였다.<sup>44)</sup>

## 3) Chicago Typographical Union 사건<sup>45)</sup>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협약의 변경이 협약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는데, 제7순회구 항소법원은 방론으로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중국적이고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중재판정의 효력을 재심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46)</sup> 또한 FAA에 정해진 취소사유 외의 사유에 의한 재심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47)</sup>

42) Id., at 935.

43) UHC Management Co. v. Computer Sciences Corp., 148 F. 3d 992(8th Cir. 1998).

44) Id., at 998. 다만 이 판결은 “법원에 의한 중재판정의 재심리사유를 확장하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는 명백하고 오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LaPine 판결과 Gateway 판결과는 달리 이러한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45) Chicago Typographical Union No. 16 v. Chicago Sun-Times, Inc., 935 F. 2d 1501.

46) Id., at 1504.

47) Id., at 1505.

### 3. Hall Street 사건

FAA가 적용되는 중재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당사자의 합의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이 오랜 기간 갈려진 상태에 있었다. 즉, FAA가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사유 외에 당사자가 합의로 “중재인의 법 적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 제7순회구, 제9순회구, 제10순회구는 이러한 합의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데 대하여,<sup>48)</sup> 제1순회구, 제3순회구, 제4순회구, 제5순회구, 제6순회구는 당사자가 합의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였다.<sup>49)</sup>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미국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연방대법원은 2008년 3월 Hall Street 사건에서 FAA 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Hall Street 사건에 대한 판결<sup>50)</sup>이 미국에서의 중재 이론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사건의 개요<sup>51)</sup>

임차인 Y(Mattel, Inc.)는 지주인 X(Hall Street Associates, L.L.C.)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에는 Y가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X가 입게 되는 모든 비용을 Y가 보상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8년 그 공장 부지에 있는 우물물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이하 ‘TCE’라고 한다)과 다른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Y는 우물에서 물건을 것을 중지하였고 그 부지의 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오리건주 환경품질국(the Oreg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의 동의 명령(consent order)에 서명하였다. 2001년 Y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의사를 통지하자, X는 통지에 기재된 일시의 Y의 계약취소권 존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Y는 TCE와 다른 오염물질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오리건 지구 제1심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취소권 존부에 관한 논점에 관해서는 Y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보상의 주장에 관해서는 양 당사자가 중재에 부칠 것을 제안하여 법원도 이에 동의하였다.<sup>52)</sup> 이 사건 중재에서 중재인은 오리건주 음료수품질법(the Oregon

48) Chicago Typographical Union No. 16 v. Chicago Sun-Times, Inc., 935 F. 2d 1501(7th Cir. 1997); Kyocera Corp. v. Prudential-Bache Trade Services, Inc., 341 F. 3d 987(9th Cir. 2003); Bowen v. Amoco Pipeline Co., 254 F. 3d 925(10th Cir., 2001).

49) Puerto Rico Telephone Co., Inc. v. U. S. Phone Mfg. Corp., 427 F. 3d. 21(1st Cir. 2005); Roadway Package System, Inc. v. Kayser, 257 F. 3d 287(3rd Cir. 2001); Syncor Intern. Corp. v. McLeland, 120 F. 3d 262(4th Cir. 1997); Gateway Technologies, Inc. v. MCI Telecommunications Corp., 64 F. 3d 993(5th Cir. 1995); Jacada(Europe), Ltd. v.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ies, Inc., 401 F. 3d 701(6th Cir. 2005).

50)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552 U. S. 576, 128 S. Ct. 1396(2008).

51) 128 S. Ct. 1396, at 1400-1401.

Drinking Water Quality Act, 이하 ‘음료수법’이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므로, Y가 음료수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 중의 보상조항은 발동되지 않는다고 하여 Y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X는 음료수법을 임대차계약 조항에 적용되는 환경법으로 판단하지 않은 중재인의 법적 결론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제1심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X의 주장을 인정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돌려보냈다.<sup>53)</sup> 환송 후의 중재판정부의 심리에서는 음료수법 위반이 임대차계약 조항에서 정한 환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X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X와 Y는 환송 후의 중재판정에는 중재인의 이자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법원에 그 중재판정의 수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X와 Y가 합의한 사법심사 기준에 따라 중재판정을 수정하였는데, 그 중재판정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X와 Y는 제9순회구 항소법원에 항소하였는데, 이 항소심에서 Y는 주장의 방향을 전환하여 2003년 *Kyocera* 사건<sup>54)</sup>을 인용하여 법의 잘못을 근거로 한 사법심사는 FAA 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Kyocera* 사건에 따른 Y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제1심법원에 대하여 “원 중재판정에 관한 승인의 신청으로 돌아가 FAA 제10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나 제11조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중재판정을 승인”할 것을 지시하였다.<sup>55)</sup>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중재인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해석을 하였고, 이로써 FAA 제10조에 열거된 취소사유 가운데 하나인 중재인의 권한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원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그와 같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implausibility)은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sup>56)</sup> 이에 대하여 X가 상고하여 수리<sup>57)</sup>된 것이 이 사건이다.

52) 법원이 명령으로 발한 중재합의에는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중재판정을 취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중재인의 사실인정이 상당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 (2) 중재인에 의한 법적 결론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3) 제1심법원은 *LaPine Technology Corp. v. Kyocera Corp.*, 130 F. 3d. 884(9th Cir. 1997) 판결을 인용하여 제9순회구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54) *Kyocera Corp. v. Prudential-Bache Trade Services, Inc.*, 341 F. 3d 987(9th Cir. 2003). *Kyocera* 사건에서 제9순회구 항소법원은 전원법정에서 1997년의 *LaPine Technology Corp. v. Kyocera Corp.*, 130 F. 3d. 884(9th Cir. 1997) 판결의 입장을 변경하여 FAA에 기한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당사자의 합의로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5)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113 Fed. Appx. 272(9th Cir. 2004).

56)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196 Fed. Appx. 476(9th Cir. 2006).

57)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550 U. S. 968, 127 S. Ct. 2875(2007).

## (2) 판결의 요지

### 1) 법원의 의견<sup>58)</sup>

연방의회는 중재에 대한 사법의 회의적 태도를 중재를 지지하고 다른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가정책으로 바꾸기 위하여 FAA를 제정하였다. 중재가 이루어진 분쟁의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는 FAA는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그 분쟁이 연방법원의 관할원인을 독자적으로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FAA는 중재 판정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를 제9조부터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다. 제9조의 문언에 따르면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취소,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으면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FAA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이 배타적인지에 관하여 항소법원에서는 판단이 갈리고 있고, 이 사건이 시작되었던 시점에서는 제9순회부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전원법정의 판결을 통해 배타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FAA 제10조와 제11조가 각각 신속한 취소와 수정을 위한 배타적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한다.<sup>59)</sup>

X는 FAA에 정해진 중재판정의 취소와 수정사유가 배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로 1953년의 *Wilko v. Swan* 사건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Wilko* 판결에서 법원은 분명히 “법의 명백한 무시와는 달리 중재인에 의한 법의 해석은 연방법원에서는 해석의 잘못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법의 명백한 무시’를 FAA 제10조에 열거되지 않은 추가적 사법심사사유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Wilko* 판결의 판시내용이 애매하고, ‘명백한 무시’가 사법심사를 위한 새로운 사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10조에 열거된 사유를 집합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둘째로 X는 중재는 계약에 의한 창조물이므로 법의 잘못에 대한 사법심사의 합의는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FAA는 분명히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많은 부분을 합의로 설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심사의 범위 확장에 관해서까지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FAA의 조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모순된다. 즉, 제10조와 제11조는 부패(corruption), 사기(fraud), 명백한 불공정(evident partiality) 등과 같이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로부터 크게 벗어난 경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중재 행동의 강조를 고려하여 동류해석(同類解釋)의 원칙(rule of ejusdem generis)을 적용하면, 이런 조문상의 기재는 그러한 한정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모든 법의 잘못에 관하여 사법심사가 허용되도록 당사자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sup>60)</sup>

58) David Souter 판사의 법정의견에 John Roberts 판사, Clarence Thomas 판사, Ruth Bader Ginsburg 판사, Samuel Alito 판사가 동조하였고, Antonin Scalia 판사는 판결 중의 각주 7 부분을 제외하고 동조하였다. 각주 7에서는 FAA의 모델이 되었던 New York 중재법의 사법심사사유가 배타적이었다는 것을 들어, 법원의 결론이 FAA의 역사와도 일관된다고 하고 있는데, A. Scalia 판사는 이 각주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하지 않았다.

59) 128 S. Ct. 1396, at 1398.

게다가 FAA 제9조의 문언은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한 취소, 수정 또는 변경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유연성을 찾아낼 수 없다. 조문의 문언에 관한 논의 외에도 FAA 제9조부터 제11조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의 본질적인 장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한정적인 사법심사에 의해 중재 우호적인 국가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61)</sup>

FAA 제10조와 제11조가 배타적인 사법심사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이 법원은 FAA 외의 근거에 의해 사법심사를 요구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구하는 데에 FAA가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주의 제정법이나 common law 상의 근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62)</sup>

이 사건에서는 중재합의가 재판절차 진행 중에 체결되었고, 법원의 명령으로 발해졌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sup>63)</sup>에 따라 제1심법원이 사건을 관리할 권한의 행사로서 그 중재합의를 다루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다.<sup>64)</sup>

## 2) 반대의견<sup>65)</sup>

John Paul Stevens 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가 법원이 법적 결론이 잘못된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할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분쟁을 중재에 부치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다음, 연방의회가 FAA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연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AA가 특정한 사유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강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공정하게 교섭하고 법원이 승인한 중재합의의 전적으로 합리적인 사법심사에 관한 조항의 강제를 금지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런 결론은 FAA의 주요한 목적과 모순되고, FAA가 제정된 역사적 경위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하였다.<sup>66)</sup>

FAA가 제정되기 전까지 미합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얼마 안 되는 예외를 제외하면 중재합의를 강제하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FAA 제2조는 이런 적대적 태도를 바꾸기 위하여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는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으며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조항은 FAA의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서 중재합의의 특징적인 강제에 반하는 일반적인 common law 상의 법칙을 폐지한다는 FAA의

60) Id., at 1403-1405.

61) Id., at 1399.

62) Id., at 1406.

63)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6조는 변론전협의(pretrial conference), 심리 일정(scheduling), 사건 관리(management)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심리의 일정, 증거 개시의 범위, 그 밖의 적절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4) 128 S. Ct. 1396, at 1407-1408.

65) J. P. Stevens 판사의 반대의견에 Anthony Kennedy 판사가 동조하였다.

66) 128 S. Ct. 1396, at 1408.

제정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FAA의 중요한 입법 목적을 감안하면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강제하는 것을 지지할 이익은 FAA의 제정 전보다도 오늘날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67)</sup>

이 법원의 의견은 제9순회구의 FAA에 대한 해석과 동일하고, FAA에 규정된 중재판정에 대한 수정과 취소 사유가 배타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전적으로 합리적인 중재합의에 대하여 그 강제를 불필요하게 거절하는 것은 FAA의 입법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법원의 의견은 동류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10조와 제11조를 배타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였는데, 제10조와 제11조의 문언 자체는 당사자가 명확히 표현한 의도를 실현할 이익을 무시하게 되는 해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 조문에는 당사자가 사법심사에 관한 추가적 사유를 더 하는 것이 인정되는지가 기술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제10조와 제11조는 그 제정 경위와 목적을 감안하면 법의 잘못을 이유로 한 사법심사를 조건으로 한 당사자의 중재합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중재에 대한 법원의 적대적 태도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sup>68)</sup> 항소법원의 판단이 과기되어야 한다고 한 점과 당사자에게 FAA 외에도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FAA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의견에는 반대한다고 하였다.<sup>69)</sup>

Stephen Breyer 판사는 FAA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법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사법심사를 합의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사건 중재합의는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법원은 중재인의 최종판정을 강제하도록 항소법원에 지시하고 사건을 환송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다.<sup>70)</sup>

#### 4. 검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제정법에 정해진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당사자 간 합의로 확장하는 것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문제는 결국 중재합의에서의 당사자자치와 중재판정의 종국성에 의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 및 이에 따른 법원 부담의 경감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Hall Stree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FAA가 정한 중재판정의 취소, 수정 또는 변경사유가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 FAA 상으로는 중재판정의 종국성이 당사자자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7) Id.

68) J. P. Stevens 판사는 이와 관련하여 Julius Henry Cohen·Kenneth Dayton, "The New Federal Arbitration Law," *Virginia Law Review*, Vol. 12 No. 4, 1926, pp. 270-271과 Tom Cullinan, "Contracting for an Expanded Scope of Judicial Review in Arbitration Agreements," *Vanderbilt Law Review*, Vol. 51 Iss. 2, 1998, p. 409를 인용하였다.

69) 128 S. Ct. 1396, at 1409-1410.

70) Id., at 1410.

Hall Street 사건은 J. P. Stevens 판사의 반대의견이 FAA의 제정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당사자가 합의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법원의 의견은 FAA 규정의 문언에 입각한 원문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데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71)</sup>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배경에는 억제 없는 계약자유의 주장에 대한 염려가 존재한다고 주장된다.<sup>72)</sup> 당사자가 정한 중재합의에 대하여 당사자가 정한 대로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법경제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 Hall Street 사건에서는 최초의 중재판정에 내려지고 나서 지방법원, 환송 후의 중재판정부, 지방법원, 항소법원, 연방대법원, 항소법원,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행되었고, 그러는 동안 법원의 많은 자원이 사용되었다. Hall Street 사건은 중재합의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 발해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중재합의에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그러한 관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항이 법원에 주는 부담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법에 대한 부담의 염려가 Hall Street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sup>73)</sup>

다만 Hall Street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구하는 데에 FAA가 유일한 수단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주의 제정법이나 common law 상의 근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FAA가 아닌 다른 법에 따른 사법심사의 확장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주의 중재법 중에는 명문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의 확장을 인정한 것이 있다.<sup>74)</sup> FAA가 적용되는 중재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특정한 때에는 FAA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sup>75)</sup>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사법심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나아가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한 때에는 이런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sup>76)</sup> 또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Hall Street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도 캘리포니아주 중재법 하에서는 당사자가 명시적 합의

71) Richard C. Reuben, “Personal Autonomy and Vacatur After Hall Street,” *Penn State Law Review*, Vol. 113 Iss. 4, 2009, p. 1122.

72) *Id.*, p. 1127.

73) *Bowen v. Amoco Pipeline Co.*, 254 F. 3d 925(10th Cir., 2001) 판결은 FAA 상의 취소사유를 한정적 열거로 해석함으로써 중재절차의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판결도 확장 합의를 허용하면 법원이 언제나 중재판정을 재심사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법원의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4) 뉴저지주에서는 중재합의에 관한 규정에서 “... 이 법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Provided however, that nothing in this act shall preclude the parties from expanding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an award by expressly providing for such expansion in a record).”라고 규정하고 있다(N. J. Rev. Stat. §2A: 23B-4(2013) c).

75) 489 U. S. 468, 109 S. Ct. 1248(1989).

76) R. C. Reuben, *supra* note 71, pp. 1156-1160.

로 중재판정의 실체에 관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sup>77)</sup> 이러한 주 판례법도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의 확장을 모색하는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FAA 제10조 제a항 제4호에 규정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인이 권한을 초과한 경우’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서 사법심사의 범위를 미리 확장하는 것은 Hall Street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sup>78)</sup> 즉, “법의 적용 및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이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중재합의에 함으로써 중재판정에서의 법 또는 사실인정의 잘못을 사법심사의 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Hall Street 사건에 대한 판결은 직접 판단한 사항보다 더 많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79)</sup> 그리고 중재합의에서의 당사자자치와 중재판정의 중국성의 충돌 문제는 장래 다른 쟁점을 포함하는 형태로 다시 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V. 취소사유 확장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논쟁

##### 1.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sup>80)</sup>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의 다수는 중재가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점과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FAA의 중재에 대한 기본 정책이라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sup>81)</sup>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다. Leanne Montgomery의 경우는 ① 양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재심리 받기로 하

77) Cable Connection, Inc. v. DIRECTV, Inc., 190 P. 3d 586(Cal. 2008).

78) Christopher R. Drahozal, “Contracting Around RUSS: Default Rules, Mandatory Rules, and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Vol. 3 Iss. 3, 2003.

79) Robert Ellis, “Imperfect Minimalism: Unanswered Questions in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128 S. Ct. 1396(2008),”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 32 No. 3, 2009.

80) Eric van Ginkel, “Reframing the Dilemma of Contractually Expanded Judicial Review: Arbitral Appeal vs. Vacatur,”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Vol. 3 Iss. 2, 2003; Karon A. Sasser, “Freedom to Contract for Expanded Judicial Review in Arbitration Agreements,” *Cumberland Law Review*, Vol. 31 Iss. 2, 2001; Leanne Montgomery, Expanded Judicial Review of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Bargaining for the Best of both Worlds: LaPine Technology Corp. v. Kyocera Corp., 130 F. 3d 884(9th Cir. 1997),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Vol. 68 Iss. 2, 2000; Sara Rudolph Cole, “Managerial Litigants? The Overlooked Problem of Party Autonomy in Dispute Resolution,” *Hastings Law Journal*, Vol. 51 Iss. 6, 2000; S. P. Younger, *supra* note 15; T. Cullinan, *supra* note 68.

81) K. A. Sasser, *supra* note 80, p. 367.

는 내용의 명확하고 명백한 의사가 표시되어 있을 것, ② 양 당사자의 합의가 중재합의를 집행하는 FAA 상의 정책에 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한다.<sup>82)</sup> 또한 Eric van Ginkel은 이러한 요건에 더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FAA의 다른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을 확장 합의의 효력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sup>83)</sup>

Karon A. Sasser의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근거로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한다. 즉, 첫째로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함으로써 소송 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중재판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소요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한다.<sup>84)</sup> 둘째로 중재의 단심제와 중재판정의 종국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중재인에 의한 중대한 법 적용 잘못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 2.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sup>85)</sup>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Kevin A. Sullivan은 중재의 장점인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따른 반대급부로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리 권한이 한정된다고 한다.<sup>86)</sup> 따라서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리사유를 확장함으로써 인해 중재의 장점인 비용의 저렴과 분쟁 해결의 신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한다. K. A. Sullivan은 이와 관련하여 1994년에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10여 년에 걸쳐 분쟁이 계속되었던 LaPine 사건을 예로 든다. 또한 그는 재심리사유의 확장이 분쟁 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받아 중재인에 선정된 자를 법률가와 같은 지위로 만들어버린다고 한다.<sup>87)</sup> 나아가 K. A. Sullivan은 FAA 상의 취소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오류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실체문제에 관한 재심리를 법원에 맡기기로 하는 합의는 FAA가 규정한 바가 아니라고 한다.<sup>88)</sup>

Hans Smit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중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다.<sup>89)</sup> 또한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면 중재인의 법 창조기

82) L. Montgomery, supra note 80, p. 551.

83) E. van Ginkel, supra note 80, p. 180.

84) K. A. Sasser, supra note 80, p. 365.

85) Brian T. McCartney, "Contracting for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Can an Errors of Law Clause Provide Two Bites of the Apple - Gateway Technologies, Inc. v. MCI Telecommunications Corp.,"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1997 Iss. 1, 1997; Hans Smit, "Contractual Modification of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A Postscript,"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8 No. 3-4, 1997; Kevin A. Sullivan, "The Problems of Permitting Expanded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Vol. 46 No. 2, 2002.

86) K. A. Sullivan, supra note 85, p. 549.

87) Id., p. 552. 이러한 주장은 재심리사유를 확장함으로써 인해 중재가 재판의 전치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치게 되고, 이는 FAA가 목적인 바가 아닌 것으로 본다 할 수 있다.

88) Id., p. 556.

89) H. Smit, supra note 85, p. 151.

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그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sup>90)</sup>

### 3. 검토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에 관한 견해는 각각의 입장마다 중재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중재가 당사자의 합의(중재합의)를 기초로 하는 자주적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확장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와는 달리 확장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는 분쟁 해결의 신속성, 단심제 등 중재의 절차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법원의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고, 중재에 의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확장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다.

부정설이 논거로 들고 있는 점, 즉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함으로써 중재가 재판의 전치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치게 되고, 법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는 주장은 확장 합의의 성질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면 분쟁 해결을 장기화시킨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 판례법상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일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을지라도,<sup>91)</sup>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면 중재판정부는 더 상세하게 이유를 붙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중재판정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부당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바로 부정설의 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L. Montgomery나 E. van Ginkel과 같이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장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LaPine 사건의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렸고,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존재가 분쟁 해결의 장기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취소사유 확장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중재합의 자체의 효력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된다는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근래 공표되고 있는 중재판정의 다수에는 장문의 이유가 첨부되어 있고,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면 중재판정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다지 설득력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FAA 상으로 2심제인 중재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sup>92)</sup>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서가 아니라 중재판정부에 의한 재심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취소사유 확장

90) Id., p. 152.

91) Bernhardt v. Polygraphic Co. of America, 350 U. S. 198, 76 S. Ct. 273(1956).

92) E. van Ginkel, Supra note 80, p. 192.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재절차상의 상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의 해석을 통해 당사자가 중재절차상의 상소를 선택한 것인지, 법원에 의한 재심리를 선택한 것인지가 분명해질 것이므로 중재절차상의 상소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 V. 나오며

FAA는 미국에서의 중재 촉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Volt 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당사자자치의 광범위한 허용을 그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FAA 상의 당사자자치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특히 FAA 제10조에 규정된 취소사유가 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적 열거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장한 당사자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결도 서로 갈리는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Hall Street 사건에서 FAA 규정의 문언상으로 제10조와 제11조가 배타적인 사법심사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FAA 제9조 내지 제11조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한정적인 사법심사를 통해 중재 우호적인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FAA가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법원이 직접 판단한 사항보다 더 많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합의에서의 당사자자치와 중재판정의 중국성의 충돌 문제는 장래 다른 쟁점을 포함하는 형태로 다시 법원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취소사유 확장 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중재제도의 본질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FAA 제10조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인지, 예시적 열거인지에 관한 논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중재의 절차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취소사유 확장 합의가 당사자의 합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확장 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의 합의와 당사자자치를 기초로 하는 중재의 기본적 구조가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를 포섭할 수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중재가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

는 분쟁 해결 수단이라는 점을 근거로, 확장 합의의 효력을 긍정하는 것이 FAA 상의 중재 정책에 합치한다고 한다. 확장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법원에 의한 재심리를 요구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법원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분쟁 해결에 시간이 걸리게 되는 등의 단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촉진함으로써 자국 법원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중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분쟁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쟁 해결의 장기화라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얻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중재의 소송 배제효는 중재합의의 기본적 효과 가운데 하나이지만, 단심제인 중재를 원칙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FAA의 구조에 비추어보면 법원에 의한 재심리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당사자 의사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는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법 적용 위반을 다룰 수 있고,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것을 전혀 다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중재합의의 소송 배제효를 배제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확장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재가 소송의 전치로 되는 것은 FAA가 상정하는 바는 아니다. 따라서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은 이러한 합의가 허용되는 법제하에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러한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hukwumerije, Okezie, "Reform and Consolidation of English Arbitration Law,"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8 No. 1, 1997.
- Cohen, Julius Henry·Kenneth Dayton, "The New Federal Arbitration Law," *Virginia Law Review*, Vol. 12 No. 4, 1926.
- Cole, Sara Rudolph, "Managerial Litigant? The Overlooked Problem of Party Autonomy in Dispute Resolution," *Hastings Law Journal*, Vol. 51 Iss. 6, 2000.
- Cullinan, Tom, "Contracting for an Expanded Scope of Judicial Review in Arbitration Agreements," *Vanderbilt Law Review*, Vol. 51 Iss. 2, 1998.
- Drahozal, Christopher R., "Contracting Around RUSS: Default Rules, Mandatory Rules, and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Vol. 3 Iss. 3, 2003.
- Ellis, Robert, "Imperfect Minimalism: Unanswered Questions in Hall Street Associates, L.L.C. v. Mattel, Inc., 128 S. Ct. 1396(2008)."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Vol. 32 No. 3, 2009.
- Franc, Laurence, "Contractual Modification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The French Position,"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0 No. 2, 1999.
- McCartney, Brian T., "Contracting for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Can an Errors of Law Clause Provide Two Bites of the Apple - Gateway Technologies, Inc. v. MCI Telecommunications Corp.," Vol. 1997 Iss. 1, 1997.
- Montgomery, Leanne, "Expanded Judicial Review of Commercial Arbitration Awards-Bargaining for the Best of both Worlds: LaPine Technology Corp. v. Kyocera Corp.," 130 F. 3d 884(9th Cir. 1997),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Vol. 68 Iss. 2, 2000.
- Reuben, Richard C., "Personal Autonomy and Vacatur After Hall Street," *Penn State Law Review*, Vol. 113 Iss. 4, 2009.
- Rubins, Noah D., "'Manifest Disregard of the Law' and Vacatur of Arbitral Award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12 No. 3-4, 2003.

- Sasser, Karon A., "Freedom to Contract for Expanded Judicial Review in Arbitration Agreements," *Cumberland Law Review*, Vol. 31 Iss. 2, 2001.
- Smit, Hans, "Contractual Modification of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A Postscript,"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8. No. 3-4, 1997.
- Sullivan, Kevin A., "The Problems of Permitting Expanded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under the Federal Arbitration Act,"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Vol. 46 No. 2, 2002.
- van Ginkel, Eric, "Reframing the Dilemma of Contractually Expanded Judicial Review: Arbitral Appeal vs. Vacatur,"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Law Journal*, Vol. 3 Iss. 2, 2003.
- Younger, Stephen P., "Agreements to Expand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Albany Law Review*, Vol. 63 Iss. 1, 1999.

## ABSTRACT

### A Study on the Validity of a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Awards in Arbitration Agreemen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s and Theories in the United States -

Soo-Mi Kang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same provision as Article 10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a contract may be exceptionally validated if the parties have clearly concluded the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awards in an arbitration agreement. It is possible that the parties create the grounds for vacating that is not stipulated in the statute by clear agreement. However, it remains the issues when this contract is valid. If we investigate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as discussed in this paper, in cases ① where an arbitrator failed to apply the substantive law expressly designated by the parties without a good reason; ② where there was a serious error in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tive law; ③ where an arbitrator decided under *ex aequo et bono* despite the parties explicitly designated the substantive law, the parties may bring an action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in court according to their agreemen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the awards. It is important enough to chang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for them whether or not the substantive law of the arbitration was applied.

With Regard to the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the awards in arbitration agreement, there are still issues how to handle the case where the parties have not designated the substantive law, and the validity of a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on reasons other than violation of law application, and relations with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where the misapplication of the law does not stipulated as the grounds for refusal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l award, and so on.

**Key Words** : Parties' Autonomy, Arbitral Award, Judicial Review of Arbitral Awards, Arbitration Agreement, Contract to Expand the Grounds for Vacating Awards in Arbitration Agreements